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9. 29 선고 2019가단1095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2. 7. 7 선고 2021나323419 판결

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. 9. 29 선고 2019가단10950 판결

전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구

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

C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새미래

담당변호사 장희국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명제

변론종결 2021. 8. 18.

판결선고 2021. 9. 29.

주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1. 주위적 청구취지

가.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

5.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5,187,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,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,

1)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. 10. 15. 접수 제165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,

2)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. 12. 7. 접수 제20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
말소등기절차를

각 이행하라.

다. 피고 C는 원고에게 6,319,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예비적 청구취지

가.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7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 5. 체결된
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5,187,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는 원고에게 16,055,57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
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대여금 채권

- 1) 소외 D는 1998년경 원고로부터 2,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그 중 500만 원만을 변제하였고, 나머지 1,500만 원에 관하여는 2005. 5. 9. 및 2009. 1. 6.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.
- 2) 원고는 2018. 4. 9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10114호로 위 1,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2018. 7. 18. 위 사건에서 ‘소외 D는 원고에게 1,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. 12. 31.부터 2018. 5. 11.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은 2018. 8. 7.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상속재산의 분할 등

- 1) 소외 D의 모친인 망 E은 2005. 6. 13.경 사망하였는데, 그 공동상속인들로는 소외 D와 망 B를 포함하여 7명의 자녀가 있었고,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들’이라 한다)이 있었다.
- 2) 이 사건 부동산들 중,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8. 10. 15.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인 망 B 명의로 ‘2005. 6. 13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, 같은 날 미등기 상태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망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.
- 3) 망 B의 아들인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C(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2018. 12. 7.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‘2018. 12. 6. 증여’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- 4) 소외 F은 2019. 5. 29. 이 사건 부동산들 중 별지 목록 제1,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‘2019. 5. 28. 매매’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다. 망 B의 사망 및 소송수계

망 B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1. 2. 16.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. 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5, 6~9, 14, 16, 20호증, 을 제7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

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

가. 원고는, 소외 D가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망 B과 소외 D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 및 그 원상회복 내지 가액반환을 구한다. 이에 대하여 피고는, 위 상속재산분할협약이 망 E이 사망한 2005.

6. 13. 무렵 체결되었으므로 그로부터 5년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.

나.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,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취소를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위와 같은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하며, 여기에서 '법률행위 있는 날'이라 함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(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다73138, 73145 판결 참조).

다. 원고가 D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8. 10. 15.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, 갑 제19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그 작성일이 '2018. 10. 5.'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, 증인 G, H, 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이자 망 B의 형제자매인 증인 G, H, I은 일치하여 '망 E의 장례를 마치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망 E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장애로 어렵게 지내는 망 B이 단독상속하는 것에 모두 합의하였다'는 취지로 증언한 점, ②

소아마비로 장애를 지니고 있던 망 B은 망 E의 사망 전부터 망 E을 모시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거주해 왔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 온 반면,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외지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망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단독으로 사용, 수익하는 것에 관하여 15년 이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망 E이 사망한 2005. 6.

13. 무렵에 이루어졌고, 다만 그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등기신청을 위하여 2018. 10. 5. 비로소 상속재산분할 협의서(갑 제19호증의2)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이 사건 소가 위와 같이 망 E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9. 10. 8.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박기범

[별지]

목 록

1. 경상북도 의성군 J 대 469㎡

2. 경상북도 의성군 J

[도로명 주소] 경상북도 의성군 K

시멘트블럭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69㎡

부속건물

토조 기와지붕 단층 부속사 17.9㎡

토조 스테이트지붕 단층 부속사 11.6㎡

3. 경상북도 의성군 L 답 1165㎡

4. 경상북도 의성군 M 답 1097㎡

5. 경상북도 의성군 N 답 836㎡. 끝.

